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0. 1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096호)	정부	2020. 7. 17.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4525호)	임이자	2020. 10. 14.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020. 11. 1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1. 27.) 및 제4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2. 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0. 12. 3.)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저가수주 및 채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통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나. 통합허가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 라.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8 신설).

다.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

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측정·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②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을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

록을 한 자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5.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제4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재대행을 받은 자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7조제2항 중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 허가서류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제47조제4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3. 제11조의10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통합허가대행업자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중 “운영하고 있는 자”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통합허가)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⑤ (생략)</p> <p>⑥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6조(통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제6항----- ----- ----- ----- ----- -----.</p> <p>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p>

<신 설>

<신 설>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방법
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
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 설>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료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측정·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②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
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
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
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
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
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
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

분석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

<신 설>

<신 설>

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이행 실적을 승계한다.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

<신 설>

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

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신 설>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

술인력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

<신 설>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 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

3. ~ 6.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

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의 관련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
가대행업을 한 자

<신 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신 설>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
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
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을 거
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1의5.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
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
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
한 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제42조(벌칙) -----

-----.

1.~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재대행을 받은 자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⑤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신 설>

⑥ ~ ⑦ (생략)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
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
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
른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3. 제11조의10제3항에 따른 경
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
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
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통
합허가대행업자

⑥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
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사
업자”라 한다)-----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
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
정적 지원을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존사업자
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
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
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
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
지 6개월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
령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 설>

<신 설>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용중지처분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